해외자매대학교환학생규정

제정 2013. 9. 21 최종개정 2020. 12. 28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예술대학교(이하 "본대학교"라 한다)의 재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및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, 해외자매대학과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교환학생 초청 및 파견 등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9.1.>
- 제2조(구분 및 자격) ① 교환학생은 파견 교환학생과 초청 교환학생으로 구분한다. <신설 2018.9.1.>
 - ②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한다. <개정 2018.9.1.. 2020.12.28.>
 - 1.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한 전문학사과정 재학생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
 - 2. 총 평점 평균이 3.00점 이상인 자
 - 3. 해당 해외자매대학의 어학기준에 명시된 공인어학성적시험 점수 보유자
 - 4. 본대학교 장기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참여자는 제외
 - 5. 마지막 학기 학생인 경우 졸업작품 제작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허가를 득한 자
 - ③ 초청 교환학생 지원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. <신설 2018.9.1.>
 - 1. 해당 지원자의 소속대학 교환학생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
 - 2. 한국어학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 회화능력을 갖춘 자

제3조(기간) 교환학생 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.

- 제4조(비용) ① 파견 교환학생 및 초청 교환학생의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는 해당 해외자매 대학과 본대학교의 협정에 근거하여, 파견 학기별로 별도 적용한다. <개정 2018.9.1.> ② 제반 수속비용 및 기숙사비, 생활비 등은 학생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, 가계곤란자
 - 및 우수학생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9.1.>
- 제5조(신청절차)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절차에 의해 각 호

의 서류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9.1., 2020.12.28.>

- 1.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<서식1>
- 2. 지도교수 추천서 <서식2>
- 3. 성적증명서
- 4. 공인어학성적표
- 5. 학업계획서(국문 및 해당 외국어) <서식3, 4>
- 6. 파견대학 수강예정과목 계획서 <서식 5>

- 제6조(선발) ① 파견 교환학생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본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제출한 다. <개정 2018.9.1.>
 - ② 서류 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해 면접을 거친다. <개정 2018.9.1.>
 - ③ 심사 기준은 담당 행정부서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 - ④ 면접 심사를 통과한 경우 결과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최종 승인한다. <개정 2020.12.28.>
- 제7조(등록 및 수강신청) ①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라도 파 견 전후에 해당학기 수업이 진행될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9.1.>
 - ②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9.1.>
 - ③ 초청 교환학생은 학기당 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로 수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9.1.> <개정 2020.12.28.>
- 제8조(학점인정 및 평가) ① 해외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대학교에서 모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최대 인정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9.1.. 2020.12.28.>
 - 1. 전문학사과정 : 최대 18학점
 - 2. 전공심한 학사학위과정 : 최대 15학점
 - ② 전 항의 성적은 졸업 총 취득학점에는 포함하되, 총 평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
 - ③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④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은 소속 전공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신청 서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처리하고,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. <개정 2020.12.28.>
 - ⑤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수 후 <서식6>의 학점인정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학점인정여부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 <개 정 2014.4.14., 2018.9.1.>
 - ⑥ 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대학교 성적으로 환산 시 P(Pass) 또는 F(Fail)로 기록한다. <신설 2018.9.1.>
 - ⑦ 초청 교환학생의 취득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, 수학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 국제교류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한다. <신설 2018.9.1.>
- 제9조(졸업) 파견 교환학생 참가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된다. <개정 2018.9.1.>
- 제10조(의무) 참가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① 교환학생 파견기간 동안 본대학교를 대표해서 성실히 학업에 임한다.
 - ② 교환학생 파견기간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, 즉시 국제교류원 및 소속 학부(전공)에 보 고한다. <개정 2018.9.1., 2020.12.28.>
 - ③ 교환학생 파견기간 중 체류국가의 각종 법규와 파견대학 학칙 등을 준수하여 학생으로 서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.

- 제11조(수학허가) 국제교류원장은 초청 교환학생 지원자에 대하여 교무처장과 함께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해당 학생의 수학 여부를 결정한 후 정규학기 과정 2개월 전까지 해당 지원 자의 소속대학 국제교류관련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9.1.>
- 제12조(수학허가 취소) 수학허가를 받은 초청 교환학생이 수학기간 중 국내 법규와 본대학 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신설 2018.9.1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<서식1>

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신청서

1. 학생

성 명	(한글)		(영문)	
학부 (전공)		학 번		
학년/학기		주민번호		
핸드폰				
이메일				사 진
주소				기 년
평점		어학성적		
*포기전성적기준		VI565		
신청대학				
및 전공				
지원목적	1.			
	2.			
(학업계획요약)	3.			

2. 보호자

성 명	지원자와의
	관계
집전화	핸드폰
주소	

위와 같이 학년도 학기 파견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의 파견을 희망하며, 보호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및 경비 부담에 동의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.

> 일 년 월

신 청 자 : 보호자 :

<서식2>

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추천서

1. 지원자 인적사항

성 명	학 부(전공)	
학 번	학년/학기	

2. 추천 내용

년 월 일

추천인 지도교수 : (인)

학부장 : (인)

<서식3>

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학업계획서

▶ 학업계획서 (국문)		

신 청 자 : (인)

년

일

<서식4>

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학업계획서

▶ 학업계획서 (해당 외국어)		

신 청 자 :

일

년

(인)

월

<서식5>

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수강예정과목 계획서

연번	해당 대학 과목명	수강희망 이유 (간략기술)	본교 유사 과목명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
※ 첨부 : 해당 대학 과목에 대한 설명

(해당 대학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원문 및 한국어로 번역하여 작성)

일 년 월

신 청 자 : (인)

추천인 지도교수 : (인)

> 학부장 : (인)

<서식6>

교환학생 학점인정신청서											
결 담당							<u>}</u>	총괄 첫		처장	
						재					
iol	부				학 년	<u>!</u>		학	번		
성	명				주민등록	번호	앞자리				
주	소				1						
נד	키 니 구	본 인	(자택))			(H.P)			
신	화번호	보호자	(자택))			(H.P)			
		I	1								
괴	정				해외자	T OH C	배학 교환	학생			
국	가 명										
학	교 명						학과의 관계	자	배대학		
학	교주소						학교 페이지				
フ	l 간					ı					
본인은 학점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
 확											
인		신청자: (인)									
불 임 기											